

감 사 보 고 서

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
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의 2015. 3. 1부터 2016. 2. 29로
종결되는 2015학년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
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확인 및
검토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2016. 2. 29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법인과 학교의
결산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2016년 4월 14일

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

감 사 김 교 태

감 사 이 우 규

피감사자(임회인) 법인 재무예산팀리더 최 재 성

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귀하